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2. 2 선고 2020가단65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305329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2. 2 선고 2020가단6596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국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진

변 론 종 결 2020. 12. 22.

판 결 선 고 2021. 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각 기재 한우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한우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한우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9. D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9. 11. 9. 10회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과 E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9. 10. 28. 아버지인 피고와 자신 명의로 등록된 별지 목록 각 기재 한우(이하 '이 사건 각 한우')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각 한우를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이 법원의 F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양도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변경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한우는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않는다.

3. 판단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위 인정사실과 을1 내지 13,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한우 구입대금과 관련 서류 구입대금 출처는 피고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한우를 사육하였고 C은 한우 구입이나 사육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상주시청으로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지원(1인 당 50두 미만)을 받기위해 C 명의로 한우를 등록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한우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이 사건 양도계약은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

별지